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정법 조기 시행 및 적용범위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당초 예고된 시행일인 6월 13일보다 5개월여 앞당겨 8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5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다. "개정안 시행 전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율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높았다"며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변경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

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특별심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현 진행단계		변제계획안 작성·수정·변경 방법	
		제출 시기	작성 방법
인가 전 채무자	신규접수예정 채무자	접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 (청산가치 보장을 위하여 최장 5년까지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음)</li> </ul>
	개시결정 전 채무자	2018. 2. 28. 까지	
	개시결정 후 채무자	숙행된 집회기일까지	
인가 후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	2018. 1. 8. 이후 (신청일까지 미납한 변제금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제기간: 변제 종료일을 변경신청일 기준 다음 달(익월)의 변제기일로 변경</li> <li>• 예시 2014. 12. 20.부터 2019.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가 2018. 1. 18. 변경신청을 한 경우 → 기간단축변경안의 변제기간을 「2014. 12. 20.부터 2018. 2. 20.까지 39개월간」으로 변경</li> </ul>
	36개월 미만 변제한 채무자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 2015. 12. 20.부터 2021. 11. 20.까지 60개월간 변제하는 채무자의 경우 → 36회차에 해당하는 2018. 11. 20. 변제금을 납부한 이후 변경신청이 가능하고, 작성방법은 위와 같음</li> </ul>
	특별심사 사건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li> <li>• 기간단축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li> </ul>

첨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Global 기업법무, 국제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비용절감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